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3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3월 16일

3. 제안이유

-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사항의 폐지등이 포함된 획기적인 “소방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95. 2. 7.)에 따라
- 그 후속 조치로 소방법에서 시·도화재예방조치로 위입된 사항중 일부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도록 내무부의 시·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의거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안 제30조)
 - 지정수량 1/5이상 1미만인 소량위험물,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폐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영 별표4에서 정한 수량의

○ 별칙(안 제43조제1항)

- 소량위험물,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10배미만),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20만원 이하)

○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현행조례에 있어서 화재예방차원으로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 저장
시에도 그에따른 취급기준과 신고사항을 정하여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 할때에는 그 설치기준의 준수
와 병행하여 신고를 의무화하여 시행해 왔으나 국민들의 화재예방에
관한 인식의 보편화와 자율적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포, 생활영업 장소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위험물 중에서 소위 1드림이상
5드림(1000리터)미만의 위험물 저장시와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수칙인 취급기준은 준수하되 신고의무 조항과 신고시 필요로
하던 신고서 및 용도폐지, 신고필증 등의 제반서류 제출의무 등을 삭제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준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안